

## 공직자 및 목회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 기준안

가. 지급기준 및 한도액 : 등록금액의 50% 지급(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).

나. 지급기준 내역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| 지 급 기 준                   | 지 급 금 액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소액 등록금<br>납부자             | 납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 | 학습 장려금으로 최저 100만원 지급 |
| 목회 연한별                    | 5년 이상                     | 협회 지원율 기준 100% 지급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 | 협회 지원율 기준 70% 지급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미만                     | 지급하지 않는다.            |
| 목회자<br>십일조<br>납부별<br>납부회수 | 십일조 납부 실적 80% 이상          | 협회 지원율 기준 100% 지급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십일조 납부 실적 50%~80% 미만      | 협회 지원율 기준 70% 지급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십일조 납부 실적 50% 미만          | 지급하지 않는다.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등록금 지급요청 직전 3개월<br>이상 미납자 | 지급하지 않는다.            |

다. 접수방법

- 1) 준비서류 : 등록금 납입영수증, 직전학기 성적증명서, 목회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
- 2) 접수방법 : 행정지원센터 하나로(<http://hanaro.tongil.or.kr>)에 입력 및 서류 첨부